영등포구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7. 4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李憲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60호로 2011년 6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는 외국인주민 종합계획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 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"로 변경(제명)
- 나. 외국인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(안 제2조)
- 다.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 지원, 적절한 시책 추진 및 실태 조사 실시(안 제4조)
- 라.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(안 제4조의2)

- 마. "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"를 "외국인주민 지원 협의"로 변경 운영(안 제7조~제12조)
- 바. "거주외국인 복지관"을 "외국인주민 지원시설"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(안 제13조~제14조)
- 사. "거주외국인 지원 민관협의회"를 폐지하고 "외국인주민 자문회의"를 구성·운영(안 제15조)
- 아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.12.31 통보된 『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』을 근거로 하여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맞게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.
- O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"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"로 변경 함.
 - 거주외국()('06)→외국()주민('07)→이주민('08)→외국()주민('08.5~)
- 안 제2조에 "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"으로 "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"으로 정의를 명확히 함.

- O 안 제3조에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구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정 함.
- 안 제4조에 구의 책무로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 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적절한 시책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 함.
- 안 제4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목표와 비전, 실태조사,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, 외국인주민 지 원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함.
-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종전 "거주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"를 "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"로 변경하여 구의원, 경찰서, 출입국관리사무소, 교육청, 종교·민간단체 관계자, 1년 이상 거주 외국인주민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임기는 2년으로 하여 외국인주민 지원,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, 지역공동체 형성사업, 다문화가족지원 연계사항등을 심의 하도록 함.
- O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에 종전 "거주외국인 복지관"을 "외국인주민 지원시설"로 변경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.

- O 안 제15조에 종전 "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민관협의회"를 "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자문회의"로 변경하고 자문회의 구성과 회의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-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말 기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2,168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0.4%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.
-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맞게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(1만명 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5% 이상)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 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 원이 이루어 질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.
-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공기관, 민간 단체와의 협의·조정기능이 부족하여 유사사업 중복투자 등행정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단위 민·관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'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'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및 지역 공동사안 등의 심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.

- 수요자인 외국인주민의 참여 없는 정책 생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불만족이 점증하고 있어 행정의 파트너로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'외국인주민 자문회의' 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의 외 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 게 됨.
- 전반적인 검토결과, 이 개정조례안은 행안부『외국인주민지원 조례 표준안』을 근거로 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,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그 밖에 법제처의 "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"에 맞게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리하여 구민이 조례의 용어나 내용을 이 해하기 쉽도록 정비 함.

참 고 자 료

1 우리구 거주외국인 현황

(2011. 4. 30기준) (단위 : 명)

구분	거주 외국인	결혼 이민자	다문화가족 초등학생	다문화가족 중학생	다문화가족 고등학생
출처	2011.4 민원역권과	2011 법무부	2011.4 교육청		
인원	42,168	3,069	314	42	6